



kotra

동남아 게임시장 동향 특별보고서

[말레이시아]

[주요내용]

-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및 저작권 법률
 - 게임 개발사- MSC 지위 획득
 - 게임 퍼블리셔-일반법인 설립

특별 2호 - 2007년 2분기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및 저작권 법률

-게임 개발사- MSC 지위 획득

-게임 퍼블리셔-일반법인 설립

1.현지 법인 설립 절차

말레이시아에서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MSC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게임 개발과 관련된 창작멀티미디어 클러스터(Creative Multimedia Cluster)분야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 공사를 통한 MSC지위 획득을 통한 회사 설립을 권장하기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들도 일반적인 현지법인 설립 절차보다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MSC지위 획득을 통한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 국내적으로는 MSC를 주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개발 공사가 현지 업체들의 보조 활동에는 소홀한 반면 상대적으로 국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관심 있다는 불만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 노력의 결과로 그 등록업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3개의 한국 업체가 MSC지위 회사와 인큐베이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국의 코드마스터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세계적인 게임 개발 업체인 E사도 MSC지위 획득을 고려 중 이라는 소식은 현지에서는 이미 화제 아닌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게임 개발사와 관련 있는 MSC지위회사 획득에 필요한 정보와 게임 퍼블리싱 및 디스트리뷰팅과 관련 있는 일반 회사 설립과정을 모두 알아보기로 한다.

1) MSC 지위 회사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Status Company)설립
과정-게임 개발 업체가 주요 대상

○ 실리콘 벨리를 모델로 한 MSC Malaysia는 1996년을 시작으로 총 1100여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 소유의 멀티미디어 개발 공사(MDeC)가 주관을 하고 있다.

○ MSC지위 회사에게 부여되는 혜택 사항

가. MSC지위 획득 회사에 부여된 우대조항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보장 규정 (Malaysian Government's Bill of Guarantees)정책 하에 부여되는 우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정보 인프라 제공
- 말레이시아 지적 노동력의 무제한 제공
- MSC에 투자한 기업 자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
- MSC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금 조달의 자유로운 허용
- 재정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년간의 면세 혜택과 법인세 면제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계수입에 관한 관세 면제
- 인터넷 검열 철폐
- 경쟁력 있는 통신세율 적용

나. 상기의 혜택 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보 통신 기술 업체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 있는 저물가 환경과 광범위한 영어 사용 등을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긍정적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이의 배경 뒤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흡수하려는 의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현재까지 다국적 기업의 MSC지위 획득이 이런 의도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요이유가 되어 왔다.

○ MSC 지위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구비 자격과 절차

가. 자격 조건

- 게임을 개발 하고 있는 업체로서 말레이시아에서 게임 개발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 전문 인력의 고용수치는 전체 인원의 최소 15%를 넘어야 함.
- MSC에 기부개념이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K-Economy 정책에 대한 기부개념으로 기술 이전 등을 수행할 의사가 있어야함.
- MSC내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법적인 틀을 구비할 능력이 있어야 함
- 반드시 MSC가 지정한 지역에 사업장을 구비하여야 함.
- MSC가 제시한 환경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할 의사가 있어야함.

나. 신청 절차

- Pre-Application Stage : 3-5일 소요
- Internal Assessment :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업체마다 상이
- Formal Application : 30일 소요
- Approval : 7-8일 소요
- Post Approval :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업체마다 상이

다. 소요 비용

- MSC지위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비용은 총 링깃 RM 2,000(한화 약 60만원 상당)이 필요함

라. 구비서류

□회사로 신청할 경우

- Pre Application Form
- MSC Malaysia 의 사업 계획서
- 재정 보증을 위한 관련 서류
- 정식 신청서

□인큐베이터로 신청할 경우

- 3장의 신청서 양식
- MS워드 양식의 신청서 양식

- 3년간의 업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회계보고서
- 3년간의 사업 계획서
- 회사 등록 서류(9,24,29 그리고 44번양식)

마. MSC지위 획득이후의 필요 사항

- 최종 허가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비법인 기업은 1달 이내에 반드시 기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MDeC을 통해 사정 허가를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MSC가 지정한 지역 내에 현지 본사나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MSC지위 회사에 관한 외부 기관의 평가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프로스터앤설리반 (Frost & Sullivan) 평가 내용

지역적으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할 위치라는 사실에 역점을 두며 특히 Shared Services and Outsourcing Hub으로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과 MSC를 통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세계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극찬한 바 있다.

○연락처

MSC MALAYSIA CLIENT CONTACT CENTER(CLIC)

clic@MDeC.com.my

T)1-800-88-8338

603-8315-3325/3193

F)603 -8318-8520

○ Bank Negara Malaysia(말레이시아 은행)과 관련한 정책 사항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MSC지위를 획득하는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을 명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16개의 Exchange Control Notices(ECMs)가 있으나 MSC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국영 은행에서 GPL(General Permission Letter)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런 요구 사항을 면제 받게 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보장 규정 정책에 따른 특권으로 단 MSC지위 회사는 아래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Give letter of undertaking to the controller of exchange control that the permission would only be used for the company and not for the benefit of any other compan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GPL
- Submit its audited annual account to Bank Negara Malaysia every financial year
- Not dealing in the Restricted Currencies(the currencies of Israel, Serbia and Montenegro)
- Not dealing with specified persons which comprise the residents, authorities, agencies and instrumentalities and any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Israel, Serbia and Montenegro
- Submits, if applicable, statistical form/statement/report on following:
 - foreign currency account maintained with banks overseas (OA Statement)
 - inter-company account maintained with non-resident non-bank party (IA Statement)
 - for foreign currency loans above the equivalent of RM 5 million obtained or offshore sources and Appendix II prior to any draw down of the loans or remittances for overseas investment in order for the controller to assign relevant identification number

- semi-annual report on foreign currency loans above the equivalent of RM 5 million obtained from offshore sources(FL1 form)
- semi-annual report on investment abroad:and Form P OR Form R for any payment to or receipt from non-resident for each fund transfer of exceeding RM10,000(or its equivalent in foreign currency)made through the authorised dealer

□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통계양식

- Form P&R - Each payment to /receipt from non-residen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RM 10,000
- FL1 -(Foreign Currency Loan)Semi-Annually
- Investment Abroad -Semi Annually
- OA Statement -Monthly
- Statement -Monthly

즉 MSC지위를 획득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은행에 Undertaking Letter와 연간 결산 계좌를 제출하고 통화의 반입과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정 통화사용을 엄격히 준수하며 지정된 통계양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일반 회사 설립 과정 - 게임 퍼블리셔나 디스트리뷰터가 주요 대상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법인 설립은 법무 회계법인의 성격을 Company Secretary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회사설립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절차

-회사명의 결정 과정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하기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 양식을 제출하는데 사용될 명의를 3달 동안 예약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타 회사가 그 명의를 등록 사용할 수 없다.

*참고 웹사이트

<http://www.gov.my/MyGov/BI/Directory/Business/BusinessByLifeCycle/StartBusiness/RegisteringYourBusiness/RegistrationOfLocalCompanies/RegistrationProcedure/>

http://www.vlc.com.my/company_formation.html

-이후 회사 대표는 인가 받은 자본 지분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다시 말하면 인가된 자본지분이 링깃 100,000이라면 납입 자본금은 링깃 2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가 자본 지분이 링깃 100,000이라면 말레이시아 현지 Co. Secretary업체들은 대행료로 링깃 2,500에서 링깃 2,800정도의 비용을 요구한다.

만약 업체가 인가 자본 지분의 비율을 기본 링깃 100,000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싶다면 추가 인지세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대개 인가 지분 자본을 링깃 100,000으로 결정한 경우 Co. Secretary에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에는 기초 설립 자금과 SSM(Company Commission) 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가 지분자본의 상향조정 시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이외에도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회사 대표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도 추가 금액이 부가된다.

- 상기 언급된 지불 금액 외에 Co.Secretary가 청구하게 될 비용은 링깃 60-100을 매달 업무보조와 등록 사무지 주소의 유지비용으로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한국 업체가 이곳 말레이시아 현지 대표(Director)를 겸비하고자 할 시에는 현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조의 비용으로 매달 추가로 링깃 500-1000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별 문제가 없는 한 소요 기간은 2주- 3주정도 소요된다.
- 회사 대표와 임원진이 한국인(외국인)일 경우, 말레이시아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동허가(취업허가)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참고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회사 납입 자본금이 최소한 링깃 350,000이 되어야 한다.
- 회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모두 한국인(외국인)인 경우 그중에 1인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거주가 허락된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이외에 FIC(Foreign Investment Committee)규제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와 현지인 이권 참여(Foreign Investment and Local Equity Participation)와 관련한 규정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 현지인 부미푸트라(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인디아계 말레이시아인이 아닌 말레이계를 칭함)를 회사 공동 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니면 의무 규정은 따로 없다.

○기타 중요 정보

하기 정보는 말레이시아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가. CCM(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지불하는 주요 비용

- Reservation of Name - RM 30
- Application Fee - RM 150
- Stamp Duty Fees - 비용은 허용되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짐
 - :링깃 100,000 미만 - RM 1,000
 - 링깃 500,000이상 1백만 이하 - RM 5,000
 - 링깃 5백만 이상 1천만 이하 - RM 10,000
 - 링깃 5천만 이상 100밀리언 이하 - RM 50,000
 - 링깃 100밀리언 이상 - RM 70,000

자료원:MIDA/Companies Act 1965(Act 125)&Subsidiary Legislation

www.mida.gov.my

나. 법무회계법인(Company Secretarial Service)의 역할을 하는 대행사에 지불하는 비용(업체마다 다름)

- Incorporation of a Sdn,Bhd - 링깃 2,000
(Private Limited Company)
- Incorporation of a Bhd - 링깃 3,500
(Limited Company)
- Monthly Fees

	Professional Fees	Retainer Fees
Private Company		
Dormant	50	100
Semi-Active	100	150
Active	150	300
Public Company		
Non-Listed	200	750
Listed	300	2,000

-상담이나 자문 비용(시간당)- 링깃 300

자료원: The Malaysian Institute of Chartered Secretaries and Administrators (MAICSA)

www.maicsa.org.my

다. 세금 요율

-Company Tax

Resident + Non-Resident company - 28%

-Personal Income Tax

Resident individuals with chargeable income of RM 30,000 and above per annum(after deduction of personal reliefs) - 1-28%

-Non-Resident Individuals

Not entitled to any personal reliefs - 28%

Withholding Tax

-Non-Residential Persons

:special classes of income(use of moveable property, technical services, installation services on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 etc) -10%

-Interest - 15%

-Royalty - 10%

-Contract payment on

:account of contractor - 10%

account of employee - 3%

Sales Tax

-모든 수입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적용 요율은 5-25%선임

Service Tax

- 5%

라. 자본 허용 비율

□ 초기 허용 비율

- 공업용 빌딩(Industrial Buildings) - 10%
- 컴퓨터와 IT장비(Computer and IT equipment) - 20%
- 환경 통제 장비(Environmental Control Equipment) - 40%
- 중장비 와 차량(Heavy Machinery & Motor Vehicles) - 20%
- 플랜트와 기계류(Plant and Machinery) - 20%
- 기타(Others) - 20%

□ 연간 허용 비율

- 공업용 빌딩(Industrial Buildings) - 3%
- 컴퓨터와 IT장비(Computer and IT equipment) - 40%
- 환경 통제 장비(Environmental Control Equipment) - 20%
- Plant and Machinery
- :중장비와 차량(Motor Vehicle, Heavy Machinery) - 20%
- 플랜트와 기계류(Plant and Machinery) - 14%
- Others - 10%

자료원: Inland Revenue Board Royal Malaysian Customs
MIDA

2. 불법 복제와 관련한 노력과 저작권 관련 내용

○말레이시아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강구책을 모색하여 왔다. 이는 지난 2005년 ESA (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으로부터 'Special 301' 보고서를 통하여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고자하는 노력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는 바로 국제 사회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불법 복제판 규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단속을 요수하는 압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불법 복제판 시장에 대한 개선을 가져온 결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된 광디스크 오락관련 소프트웨어가 적어도 5대륙 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적발된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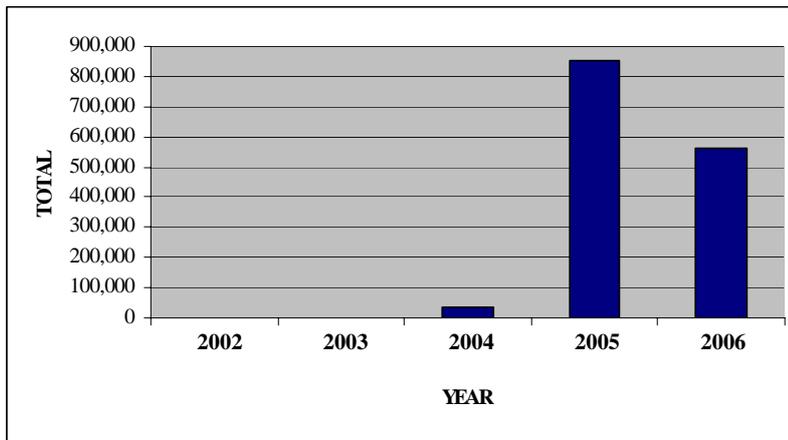
IDC에 의하면 2005년에만 전 세계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불법 복제판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수치인 USD 149 억에 해당하는 가치의 손실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발표 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어왔으며 이후 BSA Malaysia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IDC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체에서 10 포인트의 불법 복제판의 감소는 (기준 4년간) 5,451명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국가 총 생산량에 USD 1.2 billion의 가치부여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재원은 USD 240million 마지막으로 생산 증가로 인한 추가 세입은 USD 908million라는 예상 지표를 발표함으로써 그 단속과 규제가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법적 구속력의 강화와 정부의 활발해진 단속으로 아직 뿌리를 뽑기에는 역부족이나 2004년까지 게임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게임 관련 단속 수치를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게임 산업에 보이는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또한 BSA Malaysia(Business Software Alliance Malaysia)와 연계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06년 8개 회사가 적발된 데 비해 2007년에는 2007년 5월말 기준에 그 2배가 넘는 17개 회사를 적발한 사실을 들며 그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 Total of Seized Item(Games /Entertainment Software) For Exported Cases Year 2002-2006



* Total of seized item(Games/Entertainment Software)for exported cases year 2002-2006

YEAR	TOTAL OF CASES				TYPE OF SEIZED ITEM					TOTAL	VALUE OF SEIZED ITEM
	AH C	AP D	AK H	TOTAL	FILM		MUSIC CD	COMPUTER SOFTWARE	GAMES / ENTERTAINMENT SOFTWARE		
	1987	1972	1946		VCD	DVD					
2002	14	2	-	16	0	98,267	0	0	0	98,267	502,082.00
2003	301	1	-	302	0	282,224	0	0	0	282,224	1,655,750.00
2004	176	7	-	183	2,442	234,440	1,005	1,789	35,368	275,044	1,698,135.00
2005	176	10	-	186	86,900	507,392	13,236	37	850,960	1,458,525	13,040,395.00
2006	120	-	-	120	100,000	460,850	85,460	35,460	561,750	1,243,520	10,449,804.00
Total	787	20	-	807	189,342	1,583,173	99,701	37,286	1,448,078	3,357,580	27,346,166.00

자료 제공:MTDCA(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지적 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관련 내용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하 WIPO)의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계 무역 기구(WTO)의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에는 서명국으로 지적 재산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계와 구속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상표권(Trademarks) 관련내용

관련 법규는 Trade Marks Act 1976과 Trade Marks Regulations 1997에 해당되며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등록 상표권(Trade Mark)과 서비스상표권(Service Mark)을 보장하게 된다.

등록일로부터 소유권자나 인증 받은 사용자는 10년간의 등록권을 확보 받게 되며 이후 매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권을 판매하고나 대여 등을 물론이고 상표권 사용자의 지정 등에 부여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유명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철저한 검색을 통한 상표권 침해 관련 수입품에 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이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관련 내용

관련 법규인 Copyright Act 1987은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법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저작권 보호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등록과정은 불필요하며 이 법규가 다른 법규와 차별화 되는 점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국내 상거래와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특별히 구성된 집행부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장소의 수색과 물건의 압수는 물론이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특허권(Patent right)관련 내용

관련 법규는 Patents Act 1983과 Patents Regulation 1986이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음 신청 시 10년간의 권리에 대한 증명서를 그 이후 2차례 걸친 갱신으로 각각 5년의 기간으로 총 20년이 된다.

특허권을 획득한 자는 특허의 사용, 타인에게 이전 그리고 사용자 지정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료원:Malaysia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Vertical Limit Consulting Kenneth David&Co

Wong & Partners -member firm of Baker&McKenzie International

The Malaysia Government's Official Portal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Wong & Partners Consultancy Sdn Bhd

-012-283-7470

www.wpcsb.com.my

www.trademarks.com.my